제132호(2016. 8. 25.)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1. 문제 제기 ····· 1
2. 농가경제동향 ····· 2
3. 농가유형 구분과 구조변화 ····· 5
4.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실태와 과제 ····· 8
5. 맺음말 ·····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061-820-2284	soosuk@krei.re.kr
내용 문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농가소득이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 ('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령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 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 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를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을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1. 문제 제기

○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14년 1.0%, '15년 6.5%의 연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그동안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소득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노령화 및 영세농의 증가는 평균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농가경제가 최근 다소나마 호전되고 있는 모습은 규모화된 전업농가가 소득증가를 견인하는 한편 영세농가의 농외보조금, 논벼농가의 직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 증가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판단됨(KREI 2016. 6.).

○ 그간 농가소득의 오랜 정체는 시장개방 등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의 수익성 악화와 같은 산업적 요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사회경제구조 변화 역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김미복·박성재 2014).

- 2000년대 들어서도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겸업화와 동시에 농가 고령화, 영세농 집적 현상도 심화되어 소득양극화로 평균 농가소득이 정체됨.
-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증가하고, 농업외수입이 높은 2종 겸업농이 늘어나는 한편, 70세 이상 경영주가 최빈(最頻)치가 되는 고령화가 계속됨.

  *0.5ha 미만 영세농은 31.8%에서 40.1%로 증가

○ 농업구조변화에 따라 농가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는 만큼 평균 농가 개념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의 경제활동과 농업정책의 결과인 농가소득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가늠할 필요가 있음.

○ 농가유형별로 소득구조를 분석하여 주요 소득원이 어떤 항목인지, 어떤 농가들이 소득회복 추세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유형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www.krei.re.kr

2. 농가경제동향

□ 농업소득 증가로 농가소득 호전

○ '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721만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득 증가분 226만 원 중 농업소득 증가액은 95만 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이전소득 증가액은 109만 원으로 48.2%를 차지함.

○ '15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126만 원임.

- 단기적으로 '15년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축산물 수입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농작물수입 감소폭이 완화됨에 따름. 농업경영비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 것도 요인임.

표 1.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2015	'13~'14 증감률	'14~'15 증감률
농가소득	31,031	34,524	34,950	37,215	1.2	6.5
농업소득	9,127	10,035	10,303	11,257	2.7	9.3
농업총수입	27,589	30,648	32,179	33,654	5.0	4.6
농작물수입	21,942	23,155	22,942	22,760	-0.9	-0.8
축산물수입	5,099	7,397	9,071	10,530	22.6	16.1
농업잡수입	548	96	165	365	71.9	120.9
농업경영비	18,461	20,613	21,875	22,398	6.1	2.4

그림 1. 농가소득 구성요소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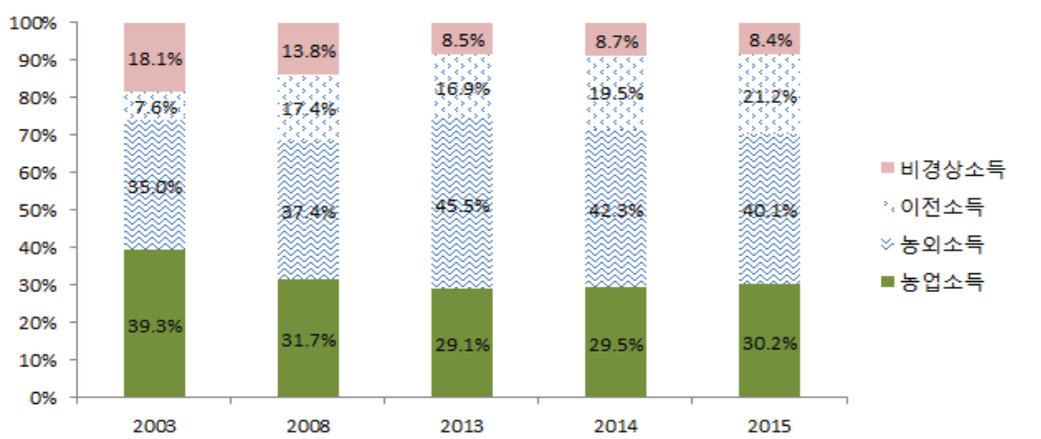

□ 농외소득 정체, 이전소득으로 보전

○ 그동안 농가소득을 견인하였던 농외소득은 최근 국가적 재난 여파, 국민경제 저성장 때문에 정체되어 2015년 농외소득은 1,4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침.

- 2012년까지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농외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음.
- 농외소득은 사업소득인 겸업소득과 급료수입이 포함된 사업외소득으로 나뉘는데 소규모 숙박, 음식점업이 포함된 겸업소득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음.

* 농외소득: 1,140만 원('08)→1,570만 원('13)→1,480만 원('14)→1,494만 원('15)

○ 경기침체로 농외소득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정부지원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함.

- '15년 이전소득은 790만 원으로, '14년 682만 원 대비 15.9% 상승하여 상승추세 지속('14년 증가율: 16.7%)

□ 논벼농가 소득증가, 전년 대비 평균 상승에 기여

○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농가 소득은 금액이 높을 뿐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평균소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논벼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여 전체 평균 증가에 기여하였지만, 논벼농가의 소득은 절대금액이 낮아 영농형태별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

단위: 천 원

	2013	2014	2015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논벼농가	23,325	22,500	25,588	-3.5%	13.7%
과수농가	34,352	34,662	34,039	0.9%	-1.8%
채소농가	29,125	25,718	27,001	-11.7%	5.0%
특작농가	21,081	19,265	15,281	-8.6%	-20.7%
화훼농가	21,878	27,983	26,981	27.9%	-3.6%
전작농가	20,122	23,528	23,576	16.9%	0.2%
축산농가	52,721	72,338	79,649	37.2%	10.1%
기타농가	46,113	57,136	72,133	23.9%	26.2%
2종 겸업	42,975	43,717	45,547	1.7%	4.2%
전체	34,524	34,950	37,215	1.2%	6.5%

주: 논벼농가는 농업총수입중 미곡수입이 최대인 농가로 다른 농가도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됨.

□ 농가소득 장기 추이와 도농격차

○ 명목 농가소득은 '05년 3천만 원 돌파 이후, '12년에 3천 1백만 원으로 소득정체가 장기화되었으나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농업소득은 '95년 1천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농가판매가격 정체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장기간 정체 혹은 감소하였으나 '12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임.
- 또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다 최근 다소 증가 추세

* 39.3%('03)→ 31.6%('08)→ 29.1%('13)→ 29.5%('14)→ 30.2%('15)

○ '15년 농가소득 상승으로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됨.

-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15년 소득 5,779만 원 대비 농가소득은 64.4%로, 가파르게 감소하다 '12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임.

* 76.4%('03)→ 65.2%('08)→ 57.6%('12)→ 61.5%('14)→ 64.4%('15)

3. 농가유형 구분과 구조변화

□ 농가유형 구분 기준

○ 농가성격에 따라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변화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유형별 소득구조의 변화 분석은 의미가 있음.

- 품목별·연령별·규모별 평균소득의 변화는 통계청(2015) 등 기존의 자료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들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찾기 위해 새로운 농가유형 구분과 소득 분석을 시도함.
- 이번 분석에서는 연령 및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소득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농가유형을 구분하였음.

- 국민건강 수준 향상 및 기계화로 다수의 전업농이 65세까지는 이전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60세가 아닌 65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 표준영농규모는 농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른 축사, 온실 등 농업자본 관련 유형자산을 영농규모에 반영하도록 경지로 환산한 '규모' 개념임.
- 축산, 시설농가는 경지규모가 작더라도 고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다양한 영농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단지 논, 밭의 경지면적만으로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농업용 고정자산(농업시설, 대동물, 대식물 등)도 영농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 표준영농규모〉

○ 농가의 영농규모는 표준영농규모(Standardized Size of Farming:SSF) 개념을 적용하여 재정의할 수 있음(최양부 외 1983).

○ 농업용 고정자산과 경지면적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할 수 있음.

$$SSF = L_C + \frac{FA}{L_P}$$

L_C: 경지면적, FA: 농업용 고정자산, L_P: 당년평균농지가

○ 기준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은 〈그림 2〉에 도시한 것과 같음.

- **그룹1(L/Y)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를 차지함. 농업성장과 연계성이 높으며 전문농가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룹임.

www.krei.re.kr

- **그룹2(S/Y) 청장년 소농**: 겸업형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귀농 등 신규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농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S/O) 고령 소농**: 우리 농업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임. 평균 연령이 74세로 50%는 75세 이상 초고령농가이고, 미래영농기반이 취약한 은퇴 직전의 계층임.
- **그룹4(L/O) 고령 중대농**: 비록 고령이지만 농업생산자원 측면에서는 아직도 비중이 높은 농가임. 이 그룹엔 주로 단작인 논벼농가가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 연령은 71세인 은퇴를 앞둔 농가로 영농후계가 가능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가 포함됨.

그림 2. 농가유형구분(표준영농규모/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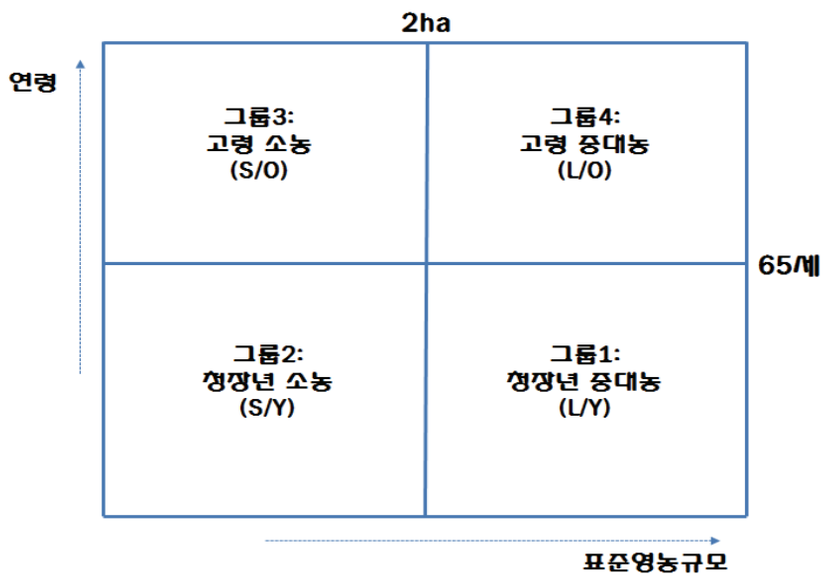

□ 농가유형 구성 변화

○ 2010년과 2015년의 농가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청장년 중대농 수의 증가, 청장년 소농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 중대농의 급격한 증가로 농업구조 변화가 잘 반영됨〈표 3〉.

- 고령 중대농의 증가는 농업의 고령화에 따라 청장년 중대농이 고령농이 된 부분과 청장년 소농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중규모 이상 전업농가로의 이동이 결합된 것으로 보임.
- 중대규모 농가 비중이 2010년 20.3%에서 33.1%로 높아졌고, 65세 이상 농가 비중 역시 8%p 상승하여 우리 농업의 고령화규모화 추이를 나타냄.

○ 특히 표준영농규모가 2ha 미만이지만 청장년 농가인 S/Y 그룹은 2010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농업총조사 경지규모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1~3ha 구간의 농가수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청장년 소농 비중은 32.5%에서 21.5%로 낮아짐.

그림 3. 경지규모 분포의 변화(농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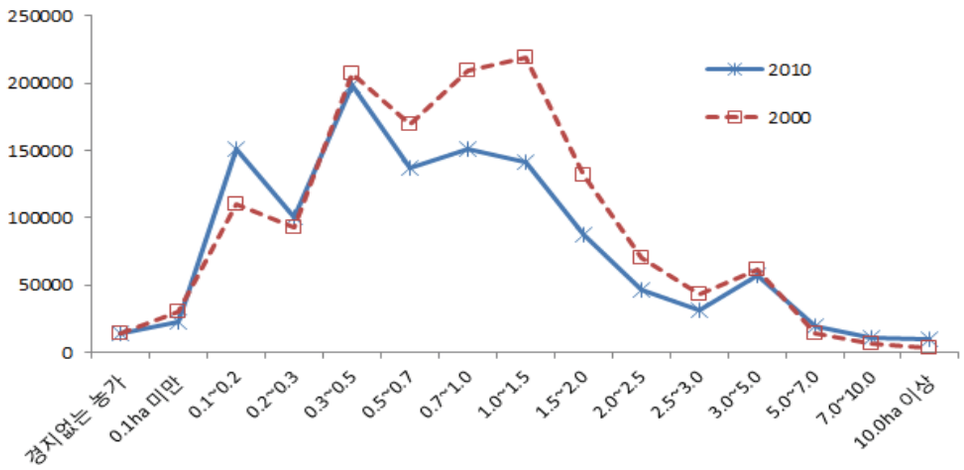

자료: 김미복·박성재(2014) 재인용.

○ 청장년 중대농 그룹은 비중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증가율도 높아 농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청장년 소농 그룹은 농가소득은 증가했지만, 이는 농외소득 부분에서 기여한 것으로 농업소득 비중은 매우 미미함.

○ 고령농가 중 소규모 농가는 농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고령 중대농 농가는 농업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평균농가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았음.

표 3. 농가유형 구조 변화

단위: 천원, %

	비중		평균 농가소득			평균 농업소득		
	2010	2015	2010	2015	증가율	2010	2015	증가율
그룹1 청장년 중대농 (L/Y)	12.5	15.7	58,500	69,800	19.3	30,300	36,600	20.8
그룹2 청장년 소농 (S/Y)	32.5	21.5	38,000	44,100	16.1	8,830	5,900	−33.2
그룹3 고령 소농 (S/O)	47.2	45.5	22,100	24,700	11.8	5,690	5,160	−9.3
그룹4 고령 중대농 (L/O)	7.8	17.4	35,500	37,500	5.6	14,800	16,900	14.2

www.krei.re.kr

4.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실태와 과제

4.1. 청장년 중대농(L/Y)

□ 규모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농업소득 상승세

○ 농업정책의 핵심 대상인 표준영농규모 2.0ha 이상, 65세 이하 청장년 중대농만을 한정하여 볼 때, 농가소득은 6,98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9.3% 상승하였음(실질 기준 12.1% 상승).

- 이 그룹의 소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농업소득으로 '15년 기준 3,660만 원으로 '10년 대비 20.8% 증가하여 농가소득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실질 기준 13.5%).

* 농업소득 증가율: 4.0%('13)→ 11.7%('14)→ 27.5%('15)

-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에서 52.4%, 농외소득은 29.8%, 이전소득은12.4%를 차지함.

○ 청장년 중대농의 농가소득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52.4%로 높아, 농업성장과 연계된 농가 유형임.

* 평균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 30.2%('15)

- 재해보험, 금리인하 등 경영안정 정책,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현대화지원, 유통구조개선 정책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남.
- 원활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그룹으로 정책금융 활성화 및 부실방지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그림 4. 청장년 중대농(L/Y)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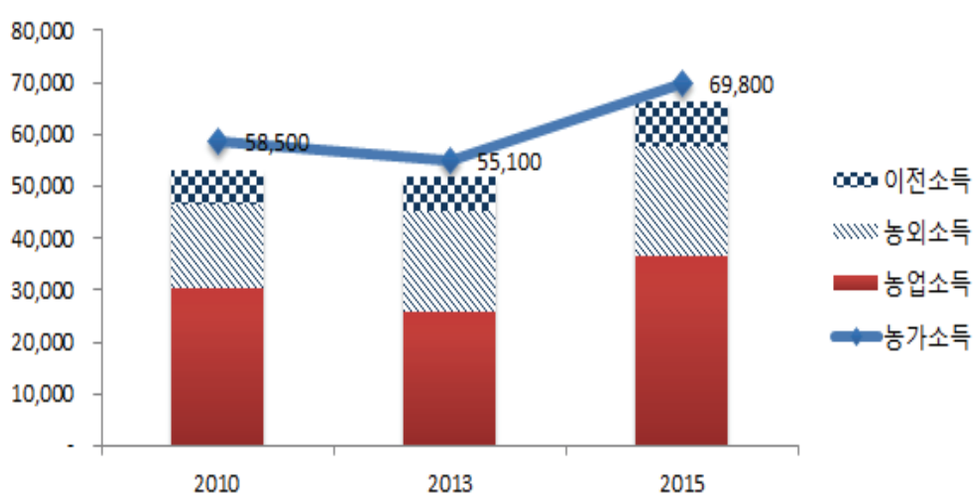

○ 청장년 중대농(L/Y) 그룹의 소득 상승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룹 비중은 2010년 12.5%에서 2015년 15.7%로 증가함.

- 경쟁력 있는 선도농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 그룹의 농가수 증가는 주로 축산, 채소, 과수농가로 인한 것인데, 2010년에 비해 축산농가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수, 채소농가가 다소 늘어남.

표 4. 청장년 중대농(L/Y) 그룹의 영농형태별 농가수 변화

단위: 농가, 천 원

	2010		2015	
	농가수	농업소득	농가수	농업소득
논벼	70(9)	26,600	72(11)	30,700
과수	47(3)	55,200	54(13)	37,500
채소	72(3)	31,200	82(12)	35,600
화훼	3(0)	39,400	3(0)	7,782
전작	13(1)	21,200	11(3)	45,400
축산	50(11)	108,000	103(6)	101,000
특작+기타	22(1)	59,900	18(2)	81,000
겸업	53(20)	10,600	65(24)	10,400
계	330		408	

주 1) 특작과 기타는 세부품목 간 교차가 일어나므로 영농형태를 통합하였음.
2) 영농형태별 농가의 평균소득 계산은 부(-)의 농업소득을 가진 농가는 제외하였음. 특정 영농형태(축산, 2종겸업)에 집중되어 있음.
3) ( )안의 숫자는 부(-)의 농업소득을 가진 농가수임.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상 농가의 증가와 경영위험 우려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 농가소득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보다 높은 가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소득도 높아지고 있어 청장년 중대농 그룹의 경쟁력은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5.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상 농가 비중

단위: 농가, 천 원

	2003	2010	2013	2015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상 농가수(A)	58	142	175	180
청장년 중대농 그룹(B)	83	330	449	408
그룹 내 비중(A/B)	69.9%	43.0%	39.0%	44.1%
A의 평균소득	77,400	86,400	93,600	113,000

www.krei.re.kr

○ 하지만,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하 농가 역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청장년, 중규모 이상 농가가 안정적으로 전문농가 그룹에 안착할 수 있는 투자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장년 중대농 그룹의 부채비율은 13%로 고령 소농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약 25%가 부채비율 20%가 넘는 등 경영위험이 높은 농가가 적지 않음.
- '15년 청장년 중대농 그룹 중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평균 영농규모는 5.7ha에 달해 동일표본인 '13년에 비해서도 0.5ha 정도 확대되었음.

표 6. 그룹별 평균 부채비율

	청장년 중대농(L/Y)	청장년 소농(S/Y)	고령 소농(S/O)	고령 중대농(L/O)
2015	0.13	0.10	0.03	0.05

4.2. 청장년 소농(S/Y)

□ 전업(1종 겸업농가 포함)[1]의 감소로 농외소득 비중 확대

○ 이 그룹의 농가소득은 '10년 대비 16.1% 상승한 4,410만 원이며 농외소득의 증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15년 기준 이 그룹의 농업소득 비중은 13.4%로, '10년 23.2%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농외소득 비중은 55.5%에서 67.6%로 증가하였고 이전소득도 다소 증가하여 525만 원으로 농업소득 51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임.

○ 농외소득은 사업소득인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나뉘고, 사업외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됨.

- 청장년 소농의 농외소득 중 대부분인 81.8%는 사업외소득이며 농외임금이 75.0%이고 농업노임과 그 외 자본수입이 소액 포함됨.

* 사업외수입: 2,464만 원('15)

* 근로수입(농외임금): 2,240만 원('15), 근로수입(농업노임): 61만 원('15)

1) 농가경제통계상의 전·겸업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업농가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업농'은 영농규모 개념이 포함된 것이고 농가경제통계에서는 이를 주업농 중 전문농가로 구분하고 있음.

농가구분		구분 기준
전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그림 5. 청장년 소농(S/Y)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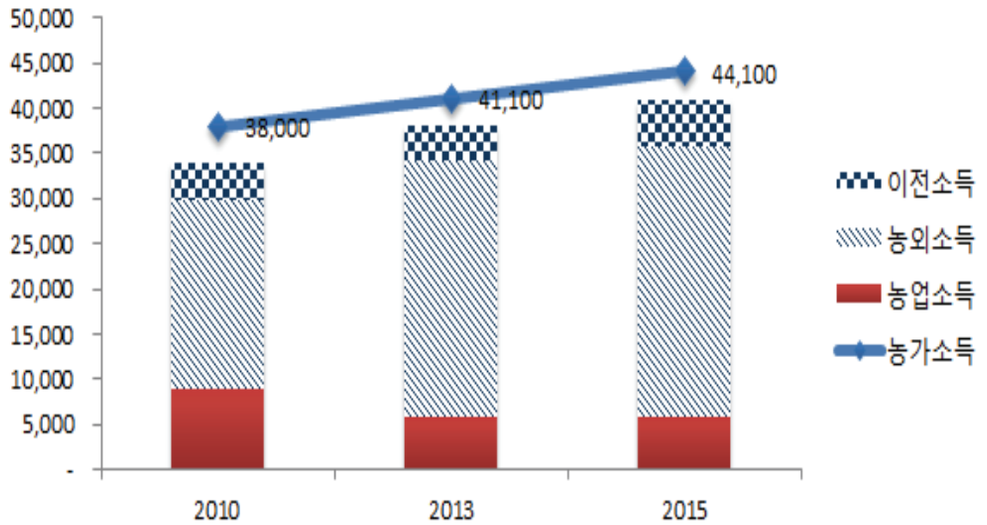

그림 6. 청장년 소농(S/Y) 농외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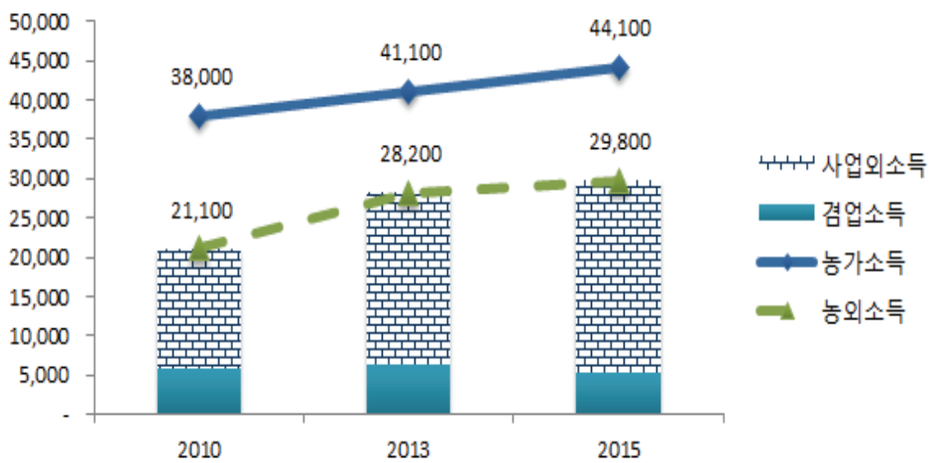

○ 청장년 소농 그룹은 주로 2종 겸업농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57.2%) '10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그룹에 속한 전업농가는 주로 채소농가인데 '10년 대비 감소하였음.

표 7. 청장년 소농(S/Y) 전·겸업별 농가수

	2010		2015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전업	235	27.36	144	25.81
1종 겸업	237	27.59	95	17.03
2종 겸업	387	45.05	319	57.17
계	859	100	558	100

www.krei.re.kr

□ 농촌지역 일자리의 중요성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가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영주 혹은 가구원 중 일부는 농업 외 활동을 하면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함.

-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65세 미만 그룹의 전업 및 1종 겸업농가가 크게 감소하였음(표 9 참조). 1종 겸업농가는 가구원 중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사람이 있지만,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 농가수 감소는 2ha 미만 소규모에서는 영농활동이 주 소득원이 되기 어려움을 나타냄.

○ 청장년 소농 그룹 중 농촌지역에서 고정 일자리가 있는 2종 겸업농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5,779만 원의 약 87%로 높은 편임. 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도 농외소득이 1,500만 원 수준으로 일자리의 유무가 총소득에 영향을 미침.

- 2종 겸업농가의 소득은 '15년 5,030만 원으로 '10년에 비해 18.9% 증가하였고 이들의 농외소득은 4,200만 원에 이름(실질 기준 11.8%).
- 농외소득원이 있는 1종 겸업의 경우 농업·농외소득 증가로 5년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해서 '15년 소득은 4,090만 원임.
- 농사 외 다른 일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15년 소득이 2,850만 원으로 '10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 청장년소농 그룹 농외임금: 1,360만 원('10)→ 2,010만 원('13)→2,180만 원('15)

○ 현재 영농기반이 취약해 소득이 낮은 젊은 소규모 전업농가의 경우, 농외소득을 확대해 겸업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부분적으로 귀농, 창업농 등 신규진입한 농가에 대해 규모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기회가 필요함.

- 1종 겸업농가 소득 4,090만 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0% 수준

그림 7. 청장년 소농(S/Y) 전·겸업별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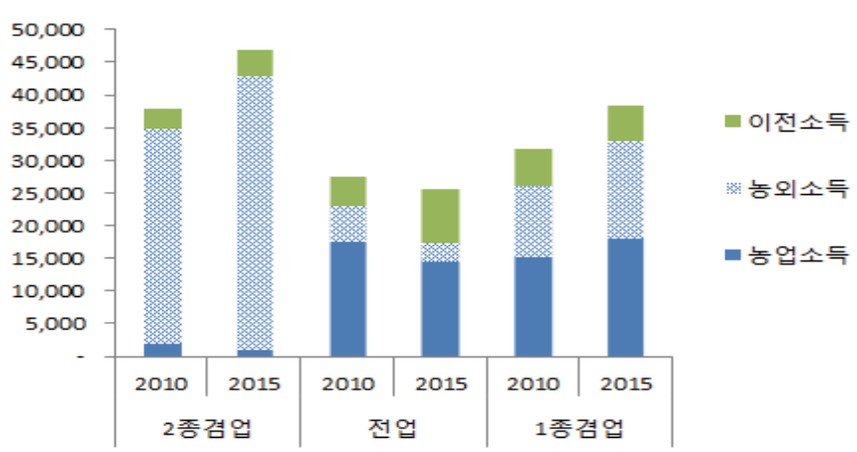

4.3. 고령 소농(S/O)

□ 고령 소농에 대한 복지정책 성과

○ 2015년 농업총조사 잠정결과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2010년에 비해 6.7%p 증가하는 등 초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음.[2)]

- 농가 경영주 연령의 최빈치가 70세 이상으로 바뀜.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농가 비중 증가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8. 경영주 연령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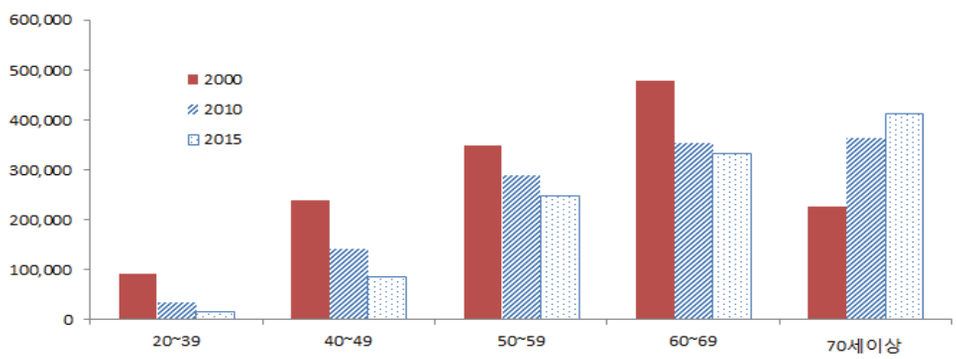

○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65세 이상 고령소농 그룹은 농가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45.5%), 이들의 소득은 이전소득 상승으로 '10년 대비 11.8% 상승하였음(실질 기준 5.0%).

- 농업소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장년 중대농과 달리 고령 소농 그룹은 '15년 기준 농업소득 20.9%, 농외소득 32.3%, 이전소득 34.8%로 구성되어 있음.[3)]

* 농업소득: 570만 원('10)→ 515만 원('13)→ 516만 원('15)

* 농외소득: 770만 원('10)→ 869만 원('13)→ 797만 원('15)

* 이전소득: 617만 원('10)→ 625만 원('13)→ 858만 원('15)

○ 고령 소농의 농가소득 중 농업외보조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원정책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15년 전체 농가의 농업외보조금은 556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15%인 것에 비해 고령 소농의 농업외보조금은 690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27.9%를 차지

* 고령소농의 농업외보조금 비중: 15.7%('10)→ 21.0%('13)→ 27.9%('15)

- 농업외보조금은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영세민생활보조금, 장애인보조금, 산업재해보험급여 등이 포함

2) 현재 2015년 농업총조사는 10세 단위 자료 가용.
3) 경조사금 등은 비경상소득이며, 분석에서는 제외함.

www.krei.re.kr

그림 9. 고령 소농(S/O)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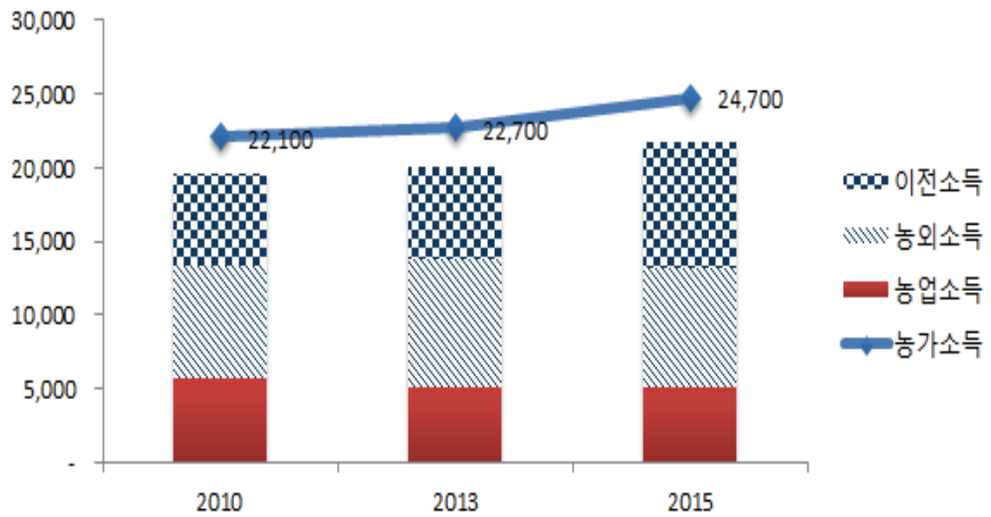

□ 소규모 정도에 따라 농업소득도 중요 요인

○ 고령 소농 그룹이라 하더라도 복지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과 연계한 소득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경비율은 66.3%로 청장년 중대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일부는 소규모 영농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지 비율이 24.2%인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은퇴 시기의 농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실질적 은퇴연령을 75세 정도로 보았을 때, 75세 미만 농가의 소득은 3,050만 원이고 농업소득은 약 20%를 차지함.

○ 75세 미만 은퇴 이전 농가는 소규모 영농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소득을 유지하거나, 농가의 소규모 겸업소득 및 단기근로 등 사업외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소득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대규모 농업 투자가 어렵고, 농외 고정 취업이 어려운 고령농이므로, 지역 내 소규모 농업 연계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 개별 농가의 경영 능력은 취약하므로 지역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그룹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로컬푸드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 6차산업화 정책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표 8. 그룹별 자경 비율

단위: ㎡, %

	고령 소농 그룹		청장년 중대농 그룹	
	평균 면적	비율	평균 면적	비율
자경	5,206	66.3[1)]	17,633	41.3[1)]
차용	2,652	33.7[1)]	25,092	58.7[1)]
대부	1,665	24.2[2)]	991	5.3[2)]

주 1) 경작지(자경+차용)에 대한 비율
2) 소유지(자경+대부)에 대한 비율

표 9. 연령·규모별 소득구조

단위: 천 원

		75세 미만	75세 이상	1ha 이상*	1ha 미만
농가소득		30,500	18,700	28,400	22,300
농업소득		6,150	4,130	8,542	2,921
농외소득		11,200	4,570	8,044	7,924
	겸업소득	3,237	639	2,157	1,843
	사업외소득	7,982	3,930	5,887	6,080
이전소득		9,610	7,500	8,363	8,729

주: * 1ha 이상 농가는 주로 논벼(31.2%), 채소, 과수농가

4.4. 고령 중대농(L/O)

□ 초고령화로 고령 중대농 증가, 후계농 육성 필요

○ 고령 중대농 그룹에 속하는 농가는 주로 논벼농가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2015년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2010년 7.8%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15년 농가소득은 3,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 상승하였고, 농업소득 45.1%, 이전소득 24.8%, 농외소득 22.5%로 구성
- 이 그룹의 평균 경지면적은 3.2ha로 청장년 소농 그룹 0.7ha에 비해 크지만, 농가소득은 오히려 낮음.
- 이 그룹의 경작면적 중 자경 비율은 66%로 네 그룹 중 가장 높음. 토지 등 농업생산자원은 고령중대농 그룹의 비중이 적지 않음.

○ 이 그룹의 농가소득이 증가하여 전체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음.

* 농가소득: 3,550만 원('10)→ 3,300만 원('13)→ 3,750만 원('15)

www.krei.re.kr

표 10. 그룹별 자경면적 비율

단위: ㎡, %

	고령 중대농 그룹		청장년 소농 그룹	
	평균 면적	비중	평균 면적	비중
자경	21,521	66.0[1]	4,451	63.2[1]
차용	11,065	34.0[1]	2,597	36.8[1]
대부	1,826	7.8[2]	564	11.2[2]

주 1) 경작지(자경+차용)에 대한 비율
2) 소유지(자경+대부)에 대한 비율

그림 10. 고령 중대농(L/O)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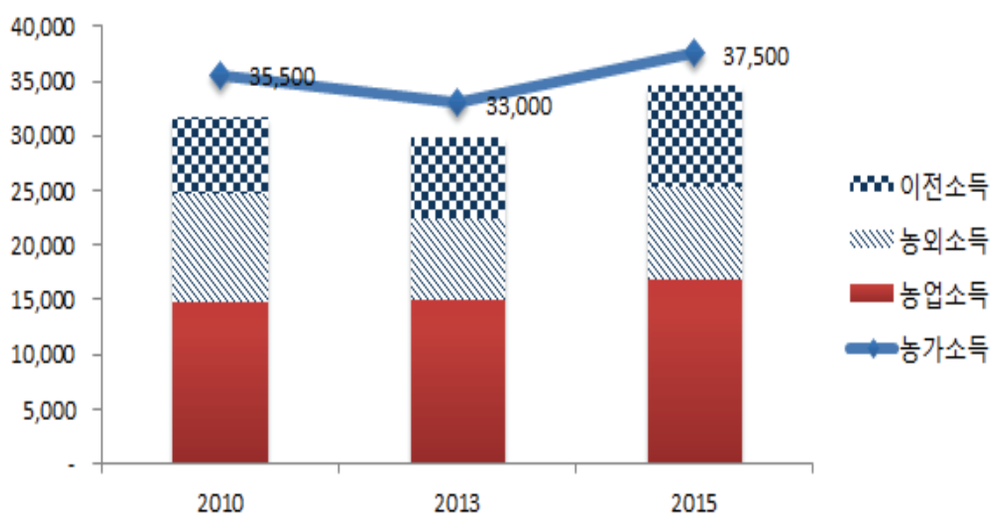

○ 고령 중대농 그룹은 농외소득이 14.0% 감소한 반면, 농업소득이 14.2%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이 '1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농업보조금이 2배 이상 증가하여 공적보조금 비중은 50% 이상 늘어났음.

- 공적보조금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지 않으나 직불금 확대로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고령소농에서 해당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10% 수준

□ 생산성 제고 및 후계인력 지원

○ 영농규모는 중규모 이상이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실제로 고령 중대농 그룹의 농가소득은 전체 농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취약함.
- 논벼농가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젊은 농가와 비교해 볼 때, 토지생산성, 고정자본생산성 모두 낮게 나타남.
- 채소농가의 경우, 그룹 간 차이가 확대됨을 알 수 있음.

○ 농업생산자원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이므로 조직화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표 11. 논벼농가 생산성 비교

단위: 만 원, 원/㎡

	고령 중대농 그룹 논벼농가		청장년 중대농 그룹 논벼농가	
	2010	2015	2010	2015
농업부가가치	1,820	2,500	4,340	6,310
토지생산성	671	717	1,187	995
고정자본생산성	606	665	1,021	932

표 12. 채소농가 생산성 비교

단위: 만 원, 원/㎡

	고령 중대농 그룹 채소농가		청장년 중대농 그룹 채소농가	
	2010	2015	2010	2015
농업부가가치	2,580	3,380	5,830	7,070
토지생산성	691	1,179	1,922	2,276
고정자본생산성	751	1,065	1,652	2,003

○ 또한 '15년 기준 고령중대농 그룹 농가 중 60%는 영농을 승계할 수 있는 4~50대 젊은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농기반 유지 측면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이 그룹의 40%는 25~65세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
- 실제로 젊은 가구원이 있는 농가의 평균소득은 4,520만 원으로 젊은 가구원이 없는 농가에 비해 약 1.4배 소득이 높음.

○ 고령 중대농 그룹 중 은퇴 직전으로 볼 수 있는 75세 이상 초고령 농가에서는 80% 이상이 영농 승계를 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어 후계 인력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www.krei.re.kr

5. 맺음말

○ 농가경제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장기간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음. 2000년대 후반까지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을 견인하였으나 농촌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농외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최근 농업소득의 증가로 전문농가가 포함된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증가폭이 확대되고 공적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증가로 농가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임.

○ 경영주 연령과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규모화·전문화 정책에 힘입어 청장년 중대농 비중이 5년 동안 3%p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증가율이 높아 농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고령화로 고령 중대농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청장년 소농의 두드러진 감소세가 있어 이 그룹들에 대한 소득안정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이 그룹을 규모화된 전문농가로 꾸준히 이끌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20%가 넘는 경영위험농가를 포함한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산출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은 농촌일자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농촌 사회 기반 유지를 위해 중요하나,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생산기반이 있는 고령 중대농 그룹은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도 필요함.

참고문헌

김미복·박성재. 2014. 『농업구조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2015 농가경제조사』. 보도자료.

_____.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방화 충격에서 농업소득 증가로 농가경제 호전』. 보도자료.

2016년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KREI 농정포커스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8. 25.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10-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